

『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0월 20일

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설 동 주

나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용도지역·지구에서의 건폐율·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행위제한 항목 삭제(안 제10조)
-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명시 및 수립지역 건폐율·용적률 완화(안 제21조의2, 제59조의3, 제64조)

- 개발행위허가 시 녹지지역의 입목축적도 완화(안 제22조)
- 방재지구의 건폐율·용적률 완화(안 제59조의3, 제64조)
-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건폐율·용적률 완화(안 제60조, 제65조)
-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 야영장 시설 허용(안 별표14, 17)
- 보전녹지지역 내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등 허용(안 별표14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, 시행규칙
- 부서합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○ 본 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으로 완화된 규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,
- 용도지역·지구에서의 건폐율·용적률을 완화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을 폐지하는 등,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